

2022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

1. 모집개요

- 신청자격 :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상」 등록된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 - ※ 단,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[3. 제외대상 참조]
 - ※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
- 지원내용 : 취미·여가, 직업탐구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 상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선정방법 :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통한 참여자 선정

2. 유의사항
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, 주간활동 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일부 차감

<주간활동 - 활동지원 급여량 조정>

구 분	단축형	기본형	확장형
주간활동서비스 급여량	85시간	125시간	165시간
활동지원서비스 감액 급여량	-	△22시간	△56시간
총 급여량	85시간	103시간	109시간

- 신청급여 시간은 원하는 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나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

3.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【제외대상】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하는 자
 - *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-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*에 입소한 자
 - 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
- 「평생교육법」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
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-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 -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 -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,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
 -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
4. 문 의 : 주민등록 상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